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
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

나.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, 기록물 이관,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(부칙 제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OOOO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

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정리에 관한 경과조치)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기구는 이 영
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의 남
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044 - 201 - 6874